



“전국 270개 NGO가 연대하여 온·오프라인 1천여명이 모니터·평가하는 16년 전통 국회감시단”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우) 137-869 서울 서초구 명달로 52-9 소강빌딩 6층 전화. 02) 523-8760~7 모사전송. 02) 585-9228 총괄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부실하고 무리한 국감보다, 국회 원 구성과, 적체된(7260개)입법활동이 더 급하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마다 서민과 기업의 사할이 달렸다. 잠시도 방치 말라

◆ 한다면, ‘정략국감’이란 비난을 받지않도록, 지난해 국감 시정조치사항 점검 정도로 기을 국감을 충실 대비하는 ‘준비국감’을 요망함 ◆

1. 세월호 참사 등 모든 국가적 재난의 최종 책임은 입법과 정부감사를 제대로 못한 입법부에 있다.

국회가 부정부패와 국가재난에 관한 심혈을 기울여 입법활동과 국정을 제대로 감사했다면, 세월호 참사나 동양그룹 사태, 원전비리, 5억 황제노역사건 같이 서민을 울리고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2. 법치주의는 합당한 입법과 공정한 법집행과 그 예측가능성이 핵심이다. 법치주의의 선봉에 입법기관인 국회가 있다. 지난해 여야가 앞장서서 전반기와 후반기 국정감사를 나누어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그간 전혀 진전이 없다가 전반기가 다 끝나고 국회 원구성도 하지 못한 채, 6월 국정감사 실시논란을 빚는 것은 국민을 법도 정치도 모르는 단순한 피치자로 우습게 보는 것이고, 보여주기식 국정감사를 하여 국정감사제도를 거부하고 폐지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빌미를 제공해 줄 뿐이다.

1)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먼저 제대로 된 법과 규정부터 만들어야 한다. 국정감사관련 법 개정을 정비하지도 않고 6월 국정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이념인 예측가능성을 무시하는 국민능멸이요, 7·30 미니 총선이라 불리는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보여주기식 정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 현행법상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국정감사 및 조사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항)를 준수하여 ‘30일 국정감사’를 반드시 ‘제대로 준비’해서 실시해야 한다.

3) 원 구성도 안된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준비기간도 부족, 피감기관도 민원업무까지 스톱하고 국감요구자료 등을 준비하기에 무리하며, 요구자료도 보낼 시간도 없는 상황에서 특히 상임위원회가 바뀐 의원들의 경우에는 더욱 더 국정감사를 실시할 전문성도 역량도 없어 자칫 국력 낭비, 시간낭비라는 국정감사 무용론·폐지론만 키우면서, 국민적 피로감만 더 초래 할 것이다.

4) 지금은 세월호 사태로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불안한 민심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적체된 민생법안 해소를 위한 입법전쟁을 할 때다. 국회에는 7260개가 넘는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보다 안전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애타게 일자리를 찾고 있는 젊은 이들에게 풍족한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법률안을 만드는 것이 더 급선무이다.

5) 백보양보하여 여야가 전격 합의하여 6월 국정감사를 실시하려 한다면, 전반기 국정감사는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업무파악과 함께 지난해 국정감사당시 시정조치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충실히 점검하는 형태로 단시간내 실속있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매년 계속되는 봉어빵 국정감사가 사라질 수 있도록 지난해의 시정조치사항이 어느 정도 이행되었는지 따져야 할 것이다.

3.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6월(7월) 국정감사 실시논란으로 원 구성도 미룬 채 정쟁을 일삼는 국회는 국민의 원성만 자초할 뿐이라고 보며, 더 이상의 정쟁을 멈추고 국회에 계류된 경제·민생법안 등 7천2백여개 법률안 처리에 우선하여 주기를 촉구하며, 나아가 정기국회 개회 전에 해야 할 결산심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국회 정상화를 촉구한다. <끝>